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2018.03.01.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조항에 의거하여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생' 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어학연수생' 으로 구분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이하 '유학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외국인 어학연수생' (이하 '연수생'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제교육원의 입학 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 제2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 부서

**제4조(입학주관부서)** ①유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학생 선발 부서: 교무행정처
2. 연수생 선발 부서: 국제교육원

②유학생 및 연수생 입학은 제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리주관부서)** ①유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보호 관리한다.

1. 유학생 관리주관 부서: 교무행정처

2. 연수생 관리주관 부서: 국제교육원

②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주관부서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행정처: 유학생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

2. 국제교육원: 연수생의 본교 입학, 생활, 안전, 상담, 및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③ 전 항의 주관관리부서는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6조(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학생 관리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 제3장 입학, 학사 및 졸업 등

**제7조(입학 전형)** ① 석사 과정 및 어학과정의 외국인 학생은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한다.

② 입학허가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수학능력 및 재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제8조(지원자격)** ① 석사 과정 및 어학과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기재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서류)** ① 석사 과정 및 어학과정에 지원하는 외국인은 당해 모집학기의 요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 과정 지원자는 TOFLE iBT 80 또는 IELTS 5.5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현지 대학 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 및 장학금)** ①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련 내규에 따라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무단결석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학사)** ①유학생의 수업, 휴학, 제적, 졸업 등 학사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른다.

②연수생의 수업, 휴학, 제적, 졸업 등 학사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출결)** ①수업 담당 교원은 외국인 학생이 결석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초 결석시에는 담당직원이, 2회째 결석한 경우 학과장 또는 부서장이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전체 수업시간의 3/4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3조(지도교수)** 외국인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최소 1회의 정기 상담을 실시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신분)** 외국인 학생은 본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 대학 시설 및 복지혜택,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15조(석사학위 및 수료증의 취득)** ①석사 과정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어학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숙소)** 연수생은 본 대학이 지정한 숙소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7조(징계 등)**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조기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내법 위반
2. 제 규정 위반
3. 그밖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

## 제4장 체류자격 유지 및 사증 등

**제18조(유학을 위한 체류자격)** ① 외국인 학생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이 학업 상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사증)** ① 외국인 학생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 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국내 입국을 지원한다.

②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 허가, 주소지 변경 등 비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보험)**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아래의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
2. 본 대학 지정 유학생보험
3. 국내 타 보험상품
4. 외국 타 보험상품

**제2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인 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